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주 택 건 설 기 준 등 에 관 한 규 정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시 확보해야하는 주차 기준을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요건 충족시 주민공동시설 설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도심 내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도시형생활주택의 확대를 유도하고 민간의 비아파트 공급 부진을 보완, 해소하기 위한 것임

3. 주요내용

가. 주차기준 완화 범위 확대(안 제27조)

현재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조례를 통해 주차기준을 20~50% 범위에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던 것을 강화 기준은 현행과 같이 유지하고, 완화할 수 있는 주차대수 확보 의무를 50~70%까지 확대하고자 함

나. 주민공동시설 설치 의무 면제(안 제55조의2)

도시형생활주택 150세대 이상 건설시 주민공동시설 설치 의무가 있던 것을 도시형생활주택으로부터 300미터 거리 이내에 주민공동시설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공시설이 위치하는 경우로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5개층까지”를 “5개층 이상으로”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완화”를 “설치기준의 2분의 1(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10분의 7) 범위에서 완화”로 한다.

제55조의2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⑧ 도시형 생활주택으로부터 300미터 거리 이내에 제3항 각 호의 시설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공시설이 위치하는 경우로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7조(주차장) ①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소수점 이하 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 다.	제27조(주차장) ①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도시형 생활주택(단지형 연 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 택 중 「주택법 시행령」 제1 0조제1항제2호 단서 또는 같 은 항 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 으로 쓰는 층수를 <u>5개층까지</u> 건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세대당 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 60제 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6 대, 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 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0.5대) 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 해야 한다. 다만, 지역별 차량 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특별	2. ----- ----- ----- ----- ----- <u>5개층 이상</u> <u>으로</u> ----- ----- ----- ----- ----- ----- ----- ----- ----- ----- ----- ----- ----- -----

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없는 특별자치도를 말한다)·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가. (생략) 나. 그 밖의 경우: 설치기준의 5분의 1(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 범위에서 강화 또는 <u>완화</u> ② ~ ⑧ (생략)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① ~ ⑦ (생략) <u><신 설></u>	----- ----- ----- ----- -----. 가. (현행과 같음) 나. ----- ----- ----- ----- ----- <u>설치기준의 2분의 1(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10분의 7) 범위에서 <u>완화</u></u>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① ~ ⑦ (현행과 같음) <u>⑧ 도시형 생활주택으로부터 300미터 거리 이내에 제3항 각 호의 시설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공시설이 위치하는 경우로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운영과	
연 락 처	(044) 201 - 3369